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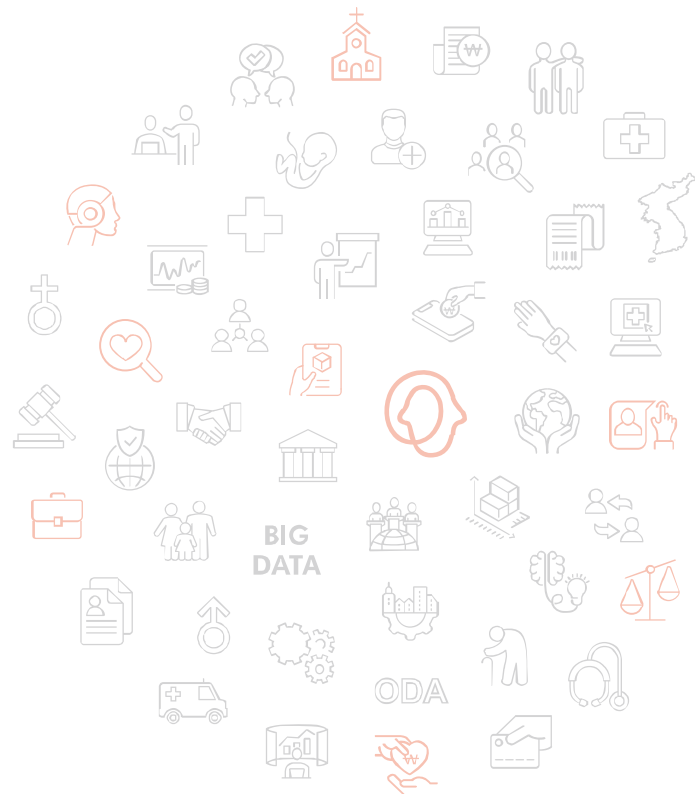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현안대응 2021-01

# 코로나19 민생 지원 특단의 대책

## - 포용적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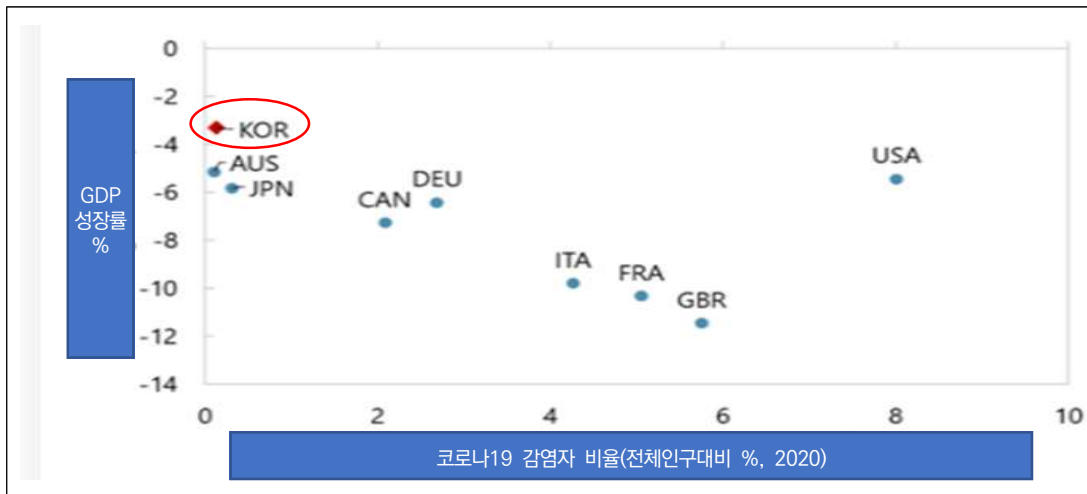
**집필진**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I 배경

- 현재 백신에 대한 보급으로 인해 코로나 19사태는 중대 기로에 있음.
  - 백신 보급으로 인해 종식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실제 선진국의 예를 보면 다양한 변이의 발생, 국민의 긴장감 이완, 백신의 접종 거부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말까지 지속 내지 주기적인 반복으로 이어진다는 비관적 전망이 공존
- 그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일부 업종과 직군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대응국의 하나로 인정될 만큼 비교적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음.

[그림 1] 실질경제성장률과 COVID-19 감염자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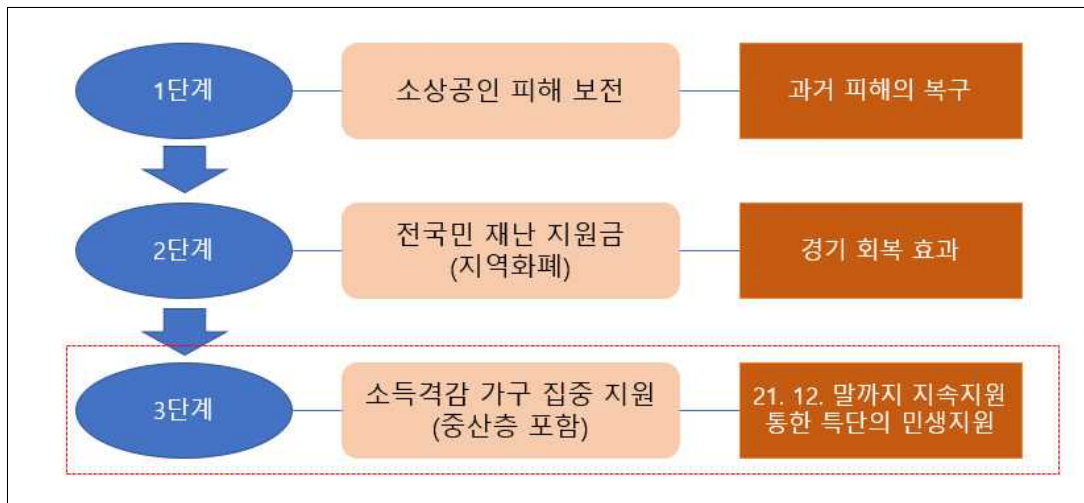


자료: IMF(2020.4.),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유럽질병예방센터(Europea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2020.4.18.).

- 그러나 경제의 전반적인 회생조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과 유망업종의 쏠림현상이 강하여 기업 간, 산업 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K-회복)이 있고 이에 국민 중 일부계층의 고통은 지속 내지 심화되고 있음.
- 이는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가 국민들에게 체감적인 효과도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실제 피해계층과 소득급락 가구에 대한 좀 더 과감하고 일상적인 지원책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음.

- 현재의 시점은 서민들의 생활이란 입장에서 보면, 가장 깊은 골짜기를 건너는 중임.
  - 향후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전제하면 ‘마지막 갈뚝고개’를 넘고 있는 국면이며, 행여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간다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지점’을 지나고 있는 국면임.
  - 따라서 지금 국면에서 특단의 민생지원 대책을 고민해봐야 할 것임.
- 따라서 2021년 8월 추경을 통해 코로나 19 회복 대책을 수립한다면 다음과 같은 3단계 전략이 필요함.
  - 1단계 : (즉시) 소상공인 피해 보전
  - 2단계 : (8월 중)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 3단계 : (9월-12월말) 민생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소득격감 가구 집중 지원

[그림 2] 코로나 19 회복을 위한 3단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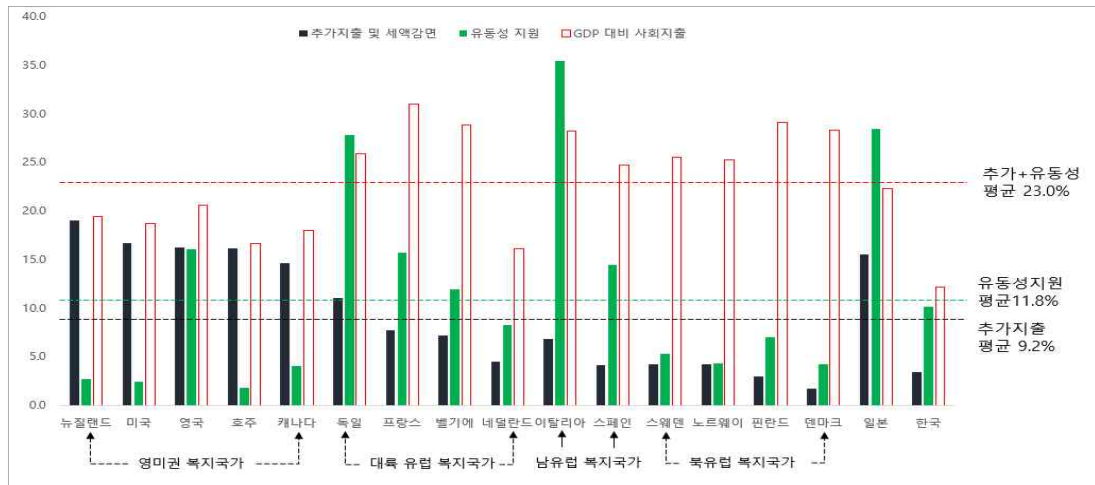
## II 코로나 대책 평가 및 실태

### 1. 정부 정책 평가

- 네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과 이를 통한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음.
  - 그간의 위기시 정책대응에 비하면 매우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것이나 주로 일시적인 현금지급과 대출정책임.
  - 이런 가운데 OECD국가 중 현금지급의 GDP 상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해 그만큼 소득의 보전 효과는 낮다고 볼 수 있음.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재정지출(추가지출 및 세액감면)의 규모가 OECD 국가 평균인 9.2%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임.

[그림 3] OECD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과 유동성 지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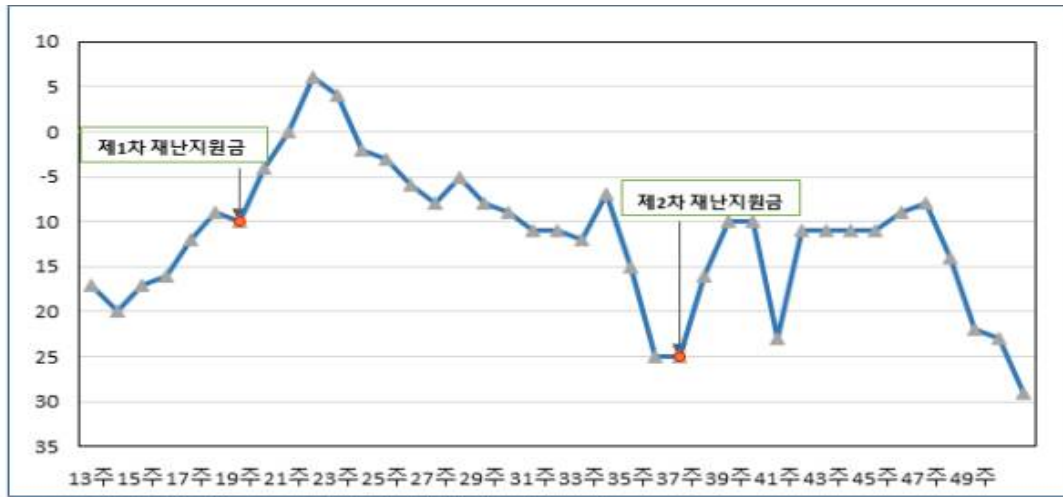
자료: IMF(2020). Fiscal Monitor, April 2020.를 활용하여 재구성

- 구체적으로 보면 그간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의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특히 1차엔 보편적 재난지원방식, 2-4차에 걸쳐서는 선별적 재난지원 방식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전해가 다양함.

- 국회예산정책처(2020)에 의하면 1차와 2차의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음이 확실하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그림 4] 소상공인 카드매출 현황(국회예산정책처, 2020.12.)

(단위: 전년 동기대비 %)



주: 제1차 재난지원금(2020.5.3.), 제2차 재난지원금(2020.9.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12.);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포털 저자 재구성.

## 2. 코로나19 시기의 소득동향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으로 보면, 2021년 1/4분기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전체적으로는 근로소득이 -1.7%, 사업소득은 크게 변하지 않음.
  - 분위별로 보면, 근로 및 사업소득이 분위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공적 이전소득 증가에 기인하여 처분가능소득은 전(全)가구는 전년 동분기 대비 1.8% 증가. 분위별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에 차이 발생
  - 2020년 연간자료와 비교시 여전히 가구들의 시장소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

〈표 1〉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구분	2021년 1분기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원수	2.99		2.41		3.07		3.07		3.27		3.14	
가구주연령	51.9		60.2		51.0		49.9		48.8		49.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2,811.5	1.2	874.1	7.1	1,786.4	3.0	2,518.5	4.9	3,398.3	3.4	5,477.3	-3.1
경상소득	2,753.4	2.0	824.4	10.0	1,733.2	4.2	2,472.3	4.1	3,327.8	3.2	5,406.5	-1.3
근로소득	1,934.6	-1.7	300.5	2.3	1,061.7	2.8	1,682.4	-3.8	2,492.3	2.2	4,133.6	-4.3
사업소득	542.7	0.3	149.6	-17.3	393.8	-7.5	560.9	12.5	608.2	-4.6	1,000.8	4.0
재산소득	21.1	-16.4	11.5	-4.6	14.0	17.8	13.0	-17.0	15.4	-23.0	51.8	-22.4
이전소득	454.6	17.6	493.8	19.7	413.6	13.2	389.3	22.9	430.2	20.3	546.2	13.7
공적	311.9	29.4	354.4	25.3	287.9	28.4	280.3	51.3	299.7	35.3	337.2	15.8
사적	142.7	-1.9	139.4	7.5	125.7	-10.9	109.0	-17.1	130.5	-4.0	209.0	10.4
-사적이전지출	207.9	-9.6	161.8	-9.6	156.1	-12.8	175.8	-15.3	218.9	-4.5	326.5	-8.1
비경상소득	58.1	-27.6	49.7	-25.2	53.2	-25.9	46.1	85.9	70.5	12.6	70.8	-59.6
비소비지출	599.2	-1.2	271.1	0.3	359.1	-3.0	501.0	-3.9	680.9	2.2	1,183.5	-1.6
처분가능소득	2,434.5	1.8	728.7	8.1	1,569.4	3.8	2,218.5	4.3	2,946.5	2.3	4,707.1	-1.1
소비지출	1,679.3	2.3	1,098.4	7.8	1,387.6	4.0	1,631.7	5.5	1,949.2	4.5	2,328.4	-4.6

주: 경상소득 =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제외로 인해 시장소득에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 0으로 치환하여 계산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통합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 한편, 소득분배는 공적이전에 의해 악화를 저지하고 있으나 심각성 내재

○ 2021년 시장소득의 5분위 배율은 2020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2019년 수준에는 미달. 반면 공적이전소득과 비소비지출이 포함될 경우, 가처분소득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19년 1분기에 비해서도 개선

-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개선된 효과는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공적이전소득이 없을 경우 'K자(字) 회복'이 고착화될 우려 존재

〈표 2〉 소득 5분위 배율(균등화 소득, 개인기준)

(단위: 배)

소득5분위 배율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시장소득	10.54	8.93	8.43	8.35	11.11	9.79	9.33	8.36	10.79
가처분소득	6.94	5.81	5.85	5.89	7.06	5.11	6.00	5.86	6.46

주: 개인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9~2021년 분기자료)

-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기준중위소득기준의 가구소득별 증감액을 볼 때 2021년 1분기 가구의 시장소득은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 시장소득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2분기 이후의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될 것임.
-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충격을 받은 가구들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75% 이상의 가구들로, 금융 조달 능력이 있는 150% 이상 가구를 제외하더라도 75%~150%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시장소득의 감소가 뚜렷한 계층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연간자료와 비교하면, 이들 가구들의 시장소득은 코로나19 이전(2019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정부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올 4분기의 시장소득 미회복 가구에 대한 사전적 대책이 요구되며, 이때 기존 생계 위기가구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
  - 이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의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및 ‘한시생계지원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함.

〈표 3〉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수준별 시장소득 및 경상소득 전년 동 분기 대비 증감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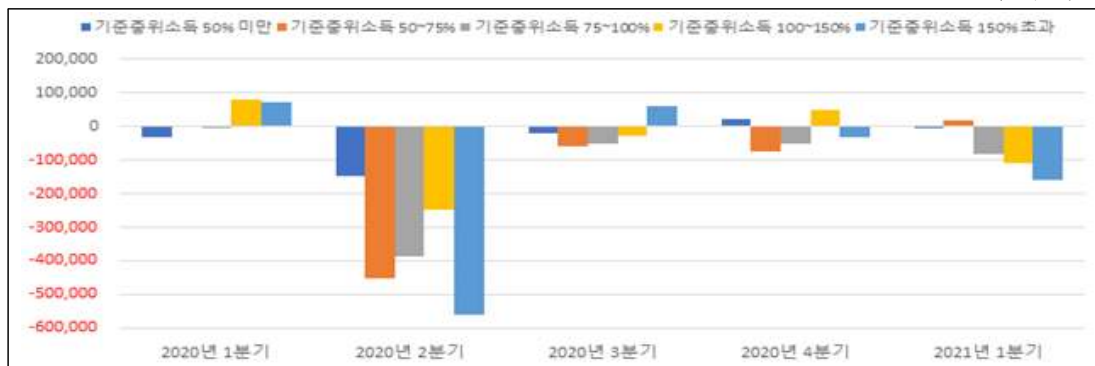
(단위: 천원, 전년동분기대비)

가구 경상소득 기준	시장소득					경상소득 (=시장소득+공적이전)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2021년 1분기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2021년 1분기
기준중위소득 50% 미만	-31	-148	-19	22	-7	-2	38	49	71	64
기준중위소득 50~75%	3	-452	-59	-75	20	-2	-24	14	39	133
기준중위소득 75~100%	-1	-388	-52	-52	-81	11	-18	95	44	52
기준중위소득 100~150%	80	-250	-30	48	-110	94	133	52	83	49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71	-561	62	-31	-160	147	-189	135	30	-85
비교(재난지원금지급시기)		1차	2차		3/4차		1차	2차		3/4차

주: 시장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경상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통합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그림 5〉 가계동향조사 기준 기준중위소득 수준별 시장소득 변화

(단위: 원/월)



주: 가구 경상소득 기준임. 전년 동분기 대비 변화량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 ‘사회적 돌봄 공백’의 증가와 가정 내 돌봄 부담의 심화

○ 2020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5,050명에 대해 「방과후돌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23.1%는 방과후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다고 응답(강지원 외, 2020)

- 돌봄 사각지대는 대상 선정 기준으로 인한 탈락과 이용 시간의 제약, 돌봄서비스 공급의 부족 및 접근성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방과후 학교 및 학원을 이용하거나 이웃 및 조부모,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에게 돌봄을 의뢰하는 경우 한 달 평균 50만원 이상을 지출함(2가지 이상 혼합해서 사용).
- 학기 중 평일에 자녀가 보호자없이 보내는 시간은 163.2분인데, 소득이 낮을수록 더 길어지는 특징. 동 수치는 2018년 146.7분(김영란 외, 2018)에 비해 증가
  -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일 때 증가하며, 지역적 특성과의 관련이 있음. 특히 중소도시에서 돌봄 공급량이 부족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가 휴업하거나 학년별·학급별 교차 출석 및 요일제 출석 등을 시행하면서 가정 내 돌봄의 욕구가 증가했으며, 어린이집과 방과후돌봄 역시 휴원하거나 긴급 돌봄만 제한적으로 실시하여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증가
  - 5월 6일 생활방역 전환기부터는 마을 돌봄을 정상적으로 운영함. 학교는 신청에 근거한 긴급돌봄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한 반면, 보건복지부는 2020.10. 이후 정상 운영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만 긴급돌봄을 실시(2020.10.6. 기준 긴급돌봄 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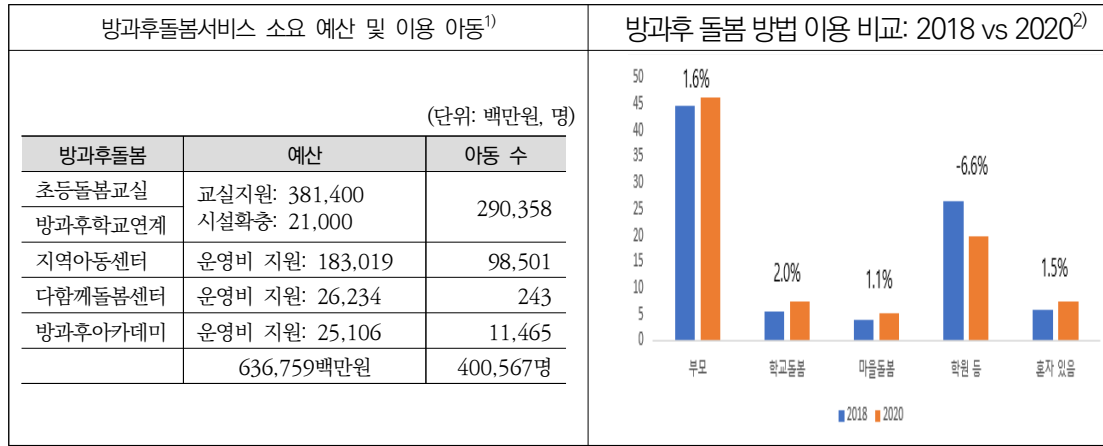
[그림 6] 긴급돌봄 제공 현황



자료: 1)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2020.2.28).  
 2)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방과후돌봄정책과. (2020.3.12.).  
 3) 보건복지부. (2020). 긴급돌봄 아동 수(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내부자료.



[그림 7] 방과후 돌봄 공급 및 이용 비중



주: 1) 예산은 2020년 당초 예산 기준임. 아동은 2019년 연말 기준 자료임. 2) 방과후돌봄 이용 방법을 100으로 한 구성비를 재구성함.  
 2) 2018년: 김영란 외(2018). 초등학교 돌봄 실태 파악 및 수요 분석 연구. p.51 재구성  
 3) 2020년: 강지원 외(2020).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방과후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p.188. 재구성

-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1.2.), 만10~17세 아동 582명 조사 결과 코로나 발생 이후 집에 혼자 있거나 아동끼리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2.1%로 조사
  - 하루 1~3시간 혼자 있는 경우는 20.1%, 하루 5시간 이상 18.6%의 순으로 조사
- 코로나19로 인해 ① 스트레스 증가, ② 우울감 증가, ③ 경제적 어려움, ④ 돌봄 부담 증가하였으며,
  -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가 등교하지 않아 학기 중 자녀가 집에 있어서 돌봄 부담이 증가”한 경우가 55.9%이며, 돌봄 부담은 일을 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전담(39.0%)하거나 일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휴가, 휴직,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활용해서 대처(27.9%)하거나, 부모, 형제 등 따로 사는 가족의 도움(19.3%)을 받았음(강지원 외, 2021, 발간예정).
  - 특히 코로나19로 “상용직”에서 종사상 지위가 하향(임시·일용직, 실업, 비경제활동인구)된 경우가 “여성”에서 두드러진다는 점 고려(강지원 외, 2021, 발간예정).

### III 추진 방향

#### 1. 대상 : “소득과 돌봄 지원이 절실한 사람 누구나”

- 코로나 19 이전에 비해 소득이 격감하여 회복되지 않은 근로계층이나 가구에 대해 그 차액의 일정분에 대해 지속적인 재난지원금 지원
  -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지원에 있어 실시간 소득파악이 되지 않아 피해업종이나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하거나 가구의 경우는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정확한 소득감소에 기반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거나 행정력의 부담이 존재하였음.
  - 또한 일회성 지급으로 인해 소득이나 수입 격감의 규모에 비해 매우 지원의 도움 정도에 있어 체감하기 어려웠음.
  - 따라서 금번 지원은 소득이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근로계층이 포함된 가구에겐 연말까지 특단의 방법으로 매월 격감된 소득의 일정부분 지원
- 돌봄지원은 가구원의 경제활동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비상한 방식으로 지원
  - 아동 돌봄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초등돌봄교실 등 학교내 공간,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사회내 돌봄인프라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비대면수업 등으로 인한 가구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육아휴직제의 연장을 통해 돌봄부담을 완화
  -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역시 긴급돌봄지원 방식(예, 서울의 돌봄SOS센터)을 통해 가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2. 지원방식 : 필요에 대한 즉응(即應)의 방식으로

- 소득지원은 국세청의 실시간소득파악시스템을 통해 2019/2020년 소득자료와 현재 소득의 비교 방식으로 EITC의 방식처럼 대상 국민에게 신청 없이도 안내하는 방식을 취하여 지급의 즉시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도록 함.
  - 현재 피해자 지원에 대해 가장 큰 걸림돌은 영업이익이나 소득의 감소에 대한 실시간 파악임. 그러나 2021. 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용)근로소득과 특고·프리

랜서의 사업소득 신고 및 파악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것을 고려하여 소득 감소분을 확인할 수 있음. 한편 내년도 2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도한 지원을 받은 가계의 경우 세금 환수(tax-back)의 방식으로 사후 조정 가능함. 이에 필요한 조치를 입법을 통해 가능토록 함.

- 현재 가계 소득이나 돌봄과 관련하여 지원이 절실한 가구가 신고할 수 있는 (가칭)「코로나 민생지원센터」를 지자체에 설치하여 이곳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중앙정부 내에도 총리실 산하에 「코로나 민생지원단」을 설치하여 관련 중앙부처들이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연계 운영을 하도록 함.
  - 또한 지자체의 센터에 건강보험공단(돌봄)이나 고용지원센터(고용), 사회보장협의체(민간 위탁 복지기관 활용) 등이 긴밀히 연계되도록 비상체제 방식을 적용함.

### 3. 적용 기간 : 2021. 8.(추경확보시점) - 2021. 12.

-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중산층을 포함하여 국민 중 일부의 생계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하되, 백신효과와 경기진작 효과가 본격화된다는 전제하여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운영
  - 그러나 이후 사태의 추이를 보며 적용기간의 연장도 가능

## IV 추진 방안

### 1. 소득지원

#### 1) (가칭) 코로나극복지원금

- (지원대상) 2019년 소득대비 일정수준(예, 20%~30% 이상) 소득 격감 가구. 단,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중위소득 기준 환산 적용(2019년 조사 결과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조정)
- (지원수준) 감소된 소득의 일정비율(예, 50%~80%)로 하되, 최대 지원금액 월 200만원
- (지원방식) 실시간 소득 파악을 활용한 가구 단위 지원

[그림 8] 실시간 소득파악 지급 방식



- 이미 파악된 2019년 소득데이터와 5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파악된 2020년 소득데이터(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포함)를 근거로 비교 기준을 마련하고, 2021.7월 현재까지 소득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태(예, 기존 소득의 20%~30% 이상 감소)에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소득을 계산하여 가구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비율(50%~80% 수준)을 산정하여 9월부터 지급 가능

- 2020년 9월부터 정부가 추진(2021년 2월 세법 개정, 2021년 4월 시행령 개정)하여 2021년 7월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월 단위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에 의한 최근 시점의 소득데이터 기반으로 재난사회보상금 시행
  - 소득세법 시행에 따라 월 단위 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일용근로소득 및 특고와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 신고 및 파악되도록 7월 지급된 모든 소득이 8월말까지 제출됨. 이후 월 단위로 주기적 실시간 소득파악이 실시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대상가구에 대해 신청없이 정부가 대상자 통보를 행함. 이 방식은 이미 EITC 제도에서 사용되고 있음.
- 또한 소득세법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이던 기타소득 또는 상시근로소득, 소상공인의 매출 신고 역시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 반영하여 조기에 자영자 소득파악도 앞당길 수 있음.

**(부대효과)**

2021.7월 실시되는 월 단위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에 대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는 국민이 자신이 지급받은 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에 대한 월 단위 실시간 소득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득파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 개편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재정소요)

- 통계청 기준 분위 하락 추정가구는 약 13.3%(2019년 대비 2020년)로 주민등록 가구 기준 약 307만 가구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21).
- 2020년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 분위별 평균소득에서 분위별 하락소득을 추정
  - 예) 1분위 하락 : 1,978천원 - 1,003천원, 2분위 하락 : 2,667천원 - 1,003천원 등
- 분위별 하락 소득금액의 25%를 코로나극복지원금 5개월 지원 시 약 4조9천억원 소요 예상

○ (부가조치)

- 2022년 1월의 연말정산과 5월의 종합소득 신고시 최종적인 소득파악액을 통해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세액환수(tax-back)방식으로 조정함.
- 단,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공적 이전소득도 세액 결정에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2) 코로나19 극복 취약계층 한시생계지원금(계속사업)

### ○ (지원대상 및 지향)

- 2021년 5월부터 시행한 보건복지부의 한시지원금을 확대하여 위의 코로나극복 지원금에 의해 지원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내지 비근로계층에 대한 안전망 유지, 특히 고소득층/고재산가를 제외한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하여 재난에 더 취약한 가구의 소비 촉진

#### (부대효과)

기존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75%)의 소득 기준을 하위 중산층(기준중위소득 100%)으로 확대하여 생계비 지원이 소비로 이어짐으로써 지역사회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음.

- 소득기준: 고소득층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 / 100%
- 일반재산기준: 고재산가 제외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및 한시생계지원 수준 유지
  -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 금융재산기준: 해당없음

〈표 4〉 가구소득수준 및 재산수준별 가구 현황

가구 경상소득 기준	총재산 기준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가구규모 (가구)			비율 (%)		
	기준 충족	기준 초과	전체	기준 충족	기준 초과	전체
기준중위소득 50% 미만	2,136,338	121,469	2,257,807	10.6	0.6	11.2
기준중위소득 50~75%	2,401,482	218,959	2,620,440	11.9	1.1	13.0
기준중위소득 75~100%	2,128,689	280,052	2,408,740	10.6	1.4	12.0
기준중위소득 100~150%	4,414,883	694,984	5,109,867	21.9	3.5	25.4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5,131,208	2,587,662	7,718,869	25.5	12.9	38.4
전체	16,212,599	3,903,124	20,115,723	80.6	19.4	100.0

주: 2019년 기준 소득 및 재산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및 '한시생계지원' 재산기준을 준용함. 거주 주택은 실거래가로 조사되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0.11.3.)에 의해 현실화율 50~70%의 중간값인 60%를 활용하여 공시가로 조정함. 불드체는 기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및 '한시생계지원'의 대상임. 모수 추정 가구 기준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한국복지패널(가구) 15차 원자료

### ○ (지원내용) 소비로 이어지는 생계비 지원

- 지원기간: 2021.8.~12.(5개월)
- 지원수준: 예산 범위 내 (5조)
- (참고) 긴급복지지원 등 저소득층 생계지원 실적 약 59만 가구 지원

- 2020년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기준 완화로 약 24만 가구 지원
- 20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으로 약 35만 가구 지원

〈표 5〉 소득·재산기준 및 수급률 시나리오별 지원액

(단위: 원/월)

소득 및 재산기준(안)	누적 대상가구 규모	수급률 시나리오			
		30%	50%	75%	100%
재산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4,537,820	734,567	440,740	293,827	220,370
재산기준*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6,666,509	500,012	300,007	200,005	150,004

## 2. 돌봄지원제

### 1) 아동돌봄 부담 완화 대책

#### ① 한시적 육아휴직 확대

##### ○ (현행제도)

-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으로, 자녀1명당 1년 이내 사용 가능
- 급여는 기간에 따라 상이,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4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함(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 ○ (실태)

- 2020년 기준 육아휴직자는 112,040명으로 전년 대비 23.0% 늘어났으며,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증가(24.5%).
- 2019년 결산 기준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 불용액은 421억원, 육아휴직급여 불용액은 715억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불용액은 138억원으로 총 1,274억원 규모. 그러나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및 학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방과후돌봄 공급 부족으로 가족 내 돌봄 부담이 증가

##### ○ (대안)

- 한시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만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기간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의 80% 지급함(2021년 기준 6개월).

○ (소요예산) 4,407억원

- 기존: 육아휴직자 수(112,040명)×급여액증가분(최대 30만원)×5개월=1,680억원
- 신규: 육아휴직 신규 이용자(302,984명)×급여액증가분(30만원)×3개월=2,727억원

② 방과후돌봄 확대

○ (현행제도)

- 기존에 방과후돌봄 등을 통해 방과후에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를 가지 않는 날 혹은 하교 후에 돌봄의 공급이 부족한 실정(유아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은 94.6%인 반면, 방과후돌봄 이용률은 15%).

○ (실태)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여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나, 방과후 아동에 대한 돌봄 공급은 부족. 사회서비스원이 전국 11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고 대인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은 인력 파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상자 및 서비스(예시)〉

- ☞ 코로나19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가정에 자가격리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 ☞ 가족의 코로나19 확진 및 입원 등으로 홀로 가정에 남아 돌봄 사람이 없는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돌봄 인력을 지원
- ☞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 돌봄인력 지원
- ☞ 그 밖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와 사회서비스원이 인정한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

○ (대안)

- 한시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LH 임대아파트(공가, 주민편의시설) 등 유휴시설에 긴급 돌봄을 위한 “마을돌봄터”를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함.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숙련된 사회복지사가 상주.
  - 공공기관 및 LH임대아파트 내 유휴공간이 활용가능한 경우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보육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을 파견하거나 지역 내 대학생 및 졸업생 등 청년 인턴을 채용(단, 1인 이상 사회복지사 배치)
- ※ 교육-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시범 실시하는 초등학교 내 돌봄 시설이 “학교돌봄터”이며,



중앙-지방이 협력사업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마을돌봄터”로 명명함.

○ (소요예산) 2,062억원

- 지방자치단체신청(300개소)×운영비\*(55만원)×인건비(250만원)×5개월=2,062억원
- ※ 운영비는 다함께돌봄센터 기준을 준용하나, 학교 수업 등을 위해 PC 및 태블릿 리스비용을 별도로 설정함(월 50,000원, 5명 동시 이용 기준).
- ※ 인건비는 전일제(1인, 8시간) 혹은 기존 인력 추가 수당(3인, 수당+교통비), 신규 채용(4시간, 3명)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긴급돌봄 인력 추가 배치〉

- ☞ 다함께돌봄센터는 상시돌봄과 일시돌봄이 가능함. 경기도는 이를 활용하여 긴급돌봄을 확대함.
- ☞ 2021년 기준 시간제 돌봄 교사 43명 확대 배치로 인력 지원에 13억1천만원(1인당 25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2억4천만원 등 총 15.5억원 투입
- ☞ 경기도는 기존 시설에서 일시돌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성 부족 문제는 여전함.

## 2) 노인,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제 운영

### ○ (현황 평가)

- 장기요양 대상인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장기요양등급자 위주이며, 등급 외자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을 여지는 적으며, 더군다나 코로나 19로 인해 서비스 공백이 생겨 가구 내의 사정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거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음.

### ○ (방안) 지역사회 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칭) 돌봄SOS센터 설치

#### - 인력 및 구조

- 시군구 단위 돌봄특별지원센터은 총 4명으로 구성함.
- 슈퍼비전이 가능한 기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과 단기(1년) 계약직 3명 채용.
- 계약직의 경우,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채용하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근 퇴직 공무원 채용도 권장함.

#### - 시행준비 및 전략

- 접수->사정->서비스 연계->서비스제공->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각 서비스 과정 별 주체에 대한 교육이 핵심.
- 교육 대상은 담당 공무원(계약직 포함) 및 지역의 서비스제공자 및 기관(요양분야, 사회적경제, 지역 복지관 등)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교육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및 서울복지교육센터 등을 활용함.
- 교육과 동시에, 지역내에서 돌봄SOS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공정한 선발 및 네트워킹 추진 필요. 지역별로 요양기관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숙도는 차이가 있음.
- 크게 총 3단계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함.

1단계: 읍면동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발굴 & 축적된 돌봄 욕구 해소  
 2단계: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돌봄 욕구 해소  
 3단계: 지역내 신규 발굴 되는 돌봄 욕구 해소

#### - 소요예산

- 초반 6개월 예산 기초지자체별 3억(인건비-1,000만원(3명)\*6개월 / 서비스 예산-2억 4천)
- 후반기 6개월 예산 기초지자체별 4억(인건비-1,000만원(3명)\*6개월 / 서비스 예산-3억 4천)

〈서울시 돌봄SOS센터〉

**1. 개요**

- 긴급돌봄 욕구를 가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총 8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정보상담 서비스(전체 시민 이용 가능) 외 7대 서비스는 50세 이상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2. 이용방식**

- 다산콜, 구청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서비스 신청 가능함.

**3. 운영방식**

- 동주민센터 복지2팀에 설치 하고 있으며, 총괄 관리는 각 자치구 돌봄지원팀에서 진행, 각 동주민센터와 각 자치구에 각각 돌봄매니저 2명(복지직, 간호직 각 1명)을 배치하였음.

**4. 이용자격**

- 세 가지 적격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I. 서비스신청 현재 당사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II. 서비스신청 현재 당사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III. 서비스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다만, '동행지원·주거편의·식사지원' 서비스는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중에도 필요 시 가능

- 이용금액은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5% 이하)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그 외 경우는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는 이용자 돌봄 욕구의 시급성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

**5. 특징**

-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장기적인 성격이 아니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용자 1인당 연간 지원 가능한 금액의 한도(연간 158만원)와 서비스 이용량의 한도 등이 책정되어 있음.
- 1인 연간 최대 지원 금액(158만원) 및 서비스별 이용 한도는 수가 지원 대상자(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며, 서비스 이용금액을 자부담하는 경우(저소득층 외 시민, 저소득층이나 자부담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전액 본인 부담
- 돌봄서비스 신청과 급여(수급차상위) 신청이 동시 진행된 경우 결과 확인 후 수가 지원 소급 결정

### 6. 8대 서비스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주요 상황	주요 지원	서비스 수가
일시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사자 수발서비스 제공</li> </ul>	돌봄 공백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우에 대해, 당사자 수발과 관련된 집중적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기관, 단기보호시설	3시간 48,170원 연간 최대 60시간
단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자의 단기간 시설 입소를 통한 서비스 제공</li> </ul>			1일 58,070원 연간 최대 14일
동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자의 필수적인 외출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li> </ul>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대해,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방식의 사업단 구축 (우리동네나눔반장) 추진 가능	60분 14,800원 교통비 지원(1인당 연간 10만원 내)
주거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보수, 대청소, 방역위생 서비스 제공</li> </ul>			60분 14,800원 재료비 지원(1인당 연간 10만원 내)
식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자의 기본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li> </ul>			1식 7,800원 연간 최대 30식
안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상적 안부확인, 야간 안전 확인, 정서 지원 등</li> </ul>	지속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 사례관리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관 등 지역 자원 활용
건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소 건강평가 및 케어플랜을 통한 서비스 진행</li> </ul>			보건소 건강돌봄팀
정보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돌봄 관련 기초 정보 제공과 돌봄 관련 문제 상담</li> <li>돌봄 관련 제도, 서비스, 제공 기관 관련 정보 제공</li> </ul>	돌봄 관련된 질문과 요청에 대해, 대응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돌봄SOS센터 직접 수행	돌봄매니저 직접 제공

\*서울시의 경우, 식사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코로나시대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의 식사지원효과가 클 것임.

### 3. 민생대책 추진체계

- 총리 산하의 「코로나19 민생지원단」 설치
- (목적)
  - 경제회복 속도, 백신 효과 정도, 고용율/실업율 수준, 계층별/가구별 소득감소 등 면밀히 조사, 이에 따른 빠르고 유연한 대응책 발굴 및 시행
- (구성)
  - 사회정책 관계부처
  - 사회정책협의회 소속 기관, 전문가 등
- (적용체계)
  - 각 시군구에 「코로나19 민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적 적용 체계 구축
  - 긴급지원을 원하는 국민들로부터 전화받고 출동하여 조사하고 지원수준 결정
  - 필요시 특별법(가칭 코로나19 민생지원법) 긴급 제정

◇ “2009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안정추진체계 구축”

- 2008년 12월 31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민생안정지원을 위한 T/F를 구축하여 보건복지부에는 ‘민생안정지원본부’, 시도에는 ‘민생안정지원단’, 시·군·구 ‘민생안정추진단<sup>1)</sup>’, 읍·면·동 단위에는 ‘민생안정지원팀<sup>2)</sup>’을 설치
- 2009년 4월 보건복지 중심 시군구 “민생안정추진단”을 고용·주거·교육·자영업자 생업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시·군·구 부단체장 산하의 ‘민생안정추진 TF’로 확대개편 하였으며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민생안정지원협의회’로 확대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
- 목적: 금융위기로 빈곤층 및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백서 편찬위원회(2011).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

1) 민생안정추진단에는 분야별 전문도우미를 채용하여, 빈곤가정이 위기에서 탈출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다른 제도와의 연계를 알선하고, 기존의 기초보장중심의 지원에서 고용·교육·주거·자영업자 생업지원까지 업무를 확대

2) 읍·면·동 ‘민생안정지원팀’에는 행정인턴을 배치하여 복지업무를 추가적으로 돕도록 하였으며, 읍·면·동 공무원이 민생안정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제공 등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

## 4. 조치 사항

### 1) 관련법 제정 및 개정

- (가칭) 「코로나 19 민생지원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2021. 7.)하여 위의 제도를 시행할 근거 마련
- 세법 등 추가개정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세금환수 등의 조치 가능한 근거 마련

### 2) 피해계층 및 업종, 가구 등 정밀 조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관련 연구원의 컨소시엄 형성하여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하고 새로운 조사를 통해 연말까지 필요한 계층 및 정책 효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토록 함.

### 3) 정책대안별 재정소요 산출 및 추경 반영

(단위: 억원)

정책 대안		대상 규모	재정 소요액
소득지원	코로나극복지원금 <sup>1)안</sup>	약 307만 가구	49,000
	코로나19극복취약계층 한시생계지원금 <sup>2)안</sup>	약 59만 가구	50,000
돌봄지원	한시적 육아휴직 확대	만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 통상임금 80% 지급	4,407
	방과후 돌봄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2,062
	돌봄SOS센터 설치	시군구 당 3억 지원	600
소계			<sup>1)안</sup> 56,069 ~ <sup>2)안</sup> 57,069

## V 기대효과

---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제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타켓팅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책과 재정의 효과성 극대화
- 백신효과와 경기회복정책 효과가 발생해도 K자형 회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효과를 보는 계층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인정
- 코로나 19로 인해 그간의 정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피해계층들이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에 대해 이러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가계의 고통을 완화하는 체감효과 극대화

**부록 1**      **가계동향조사 기준 2020년 소득분위별 변화**

(부표 1) 2020년 1~4분기 소득 변화(전년 동분기 대비)

(단위: 천원,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0. 1/4	939.9	-1.9	1,920.3	0.1	2,678.7	2.7	3,600.5	4.0	6,088.6	4.2
소득	896.8	-2.0	1,874.1	0.0	2,618.0	1.9	3,527.3	3.1	5,915.5	2.7
근로소득	327.8	-6.9	1,118.5	-8.2	1,793.0	3.4	2,521.9	4.8	4,444.1	3.6
사업소득	161.6	7.8	431.4	23.2	497.9	0.8	601.6	-7.8	912.8	-4.4
재산소득	8.5	-38.3	9.5	15.6	13.9	37.4	16.7	-9.4	69.5	34.7
이전소득	398.9	-0.2	314.7	5.6	313.3	-5.8	387.1	13.1	489.1	5.5
공적	273.3	8.3	183.3	5.6	189.1	-9.6	234.1	21.2	293.7	36.2
사적	125.5	-14.7	131.4	5.7	124.2	0.6	153.0	2.7	195.4	-21.2
처분가능소득	841.5	-1.7	1,720.7	0.5	2,369.9	1.3	3,167.2	3.0	5,172.9	3.0
2020. 2/4	1,107.3	11.5	2,072.7	7.6	2,761.6	7.5	3,542.2	5.5	5,505.6	0.1
소득	1,076.6	11.1	2,044.8	8.3	2,723.8	7.6	3,501.9	5.0	5,403.5	-0.9
근로소득	293.8	-26.1	1,143.5	-12.0	1,815.7	5.8	2,421.4	0.1	3,650.7	-7.1
사업소득	189.4	5.8	381.0	18.2	409.3	-24.9	533.1	-15.6	1,097.4	-1.0
재산소득	9.5	-13.6	5.4	-46.5	14.7	12.2	17.4	11.5	37.6	-51.9
이전소득	583.9	53.1	515.0	101.6	484.1	88.6	530.1	96.2	617.8	83.9
공적	482.5	85.4	409.3	164.7	406.7	137.7	393.7	141.5	437.3	222.0
사적	101.4	-16.3	105.7	4.9	77.3	-9.7	136.3	27.1	180.4	-9.9
처분가능소득	1,012.9	11.4	1,881.3	9.1	2,472.5	8.0	3,146.0	5.1	4,778.5	0.1
2020. 3/4	1,039.3	0.9	2,032.9	0.5	2,745.3	2.7	3,597.7	3.1	5,664.0	2.0
소득	1,000.2	0.3	2,000.1	0.4	2,693.7	1.7	3,544.0	2.7	5,610.6	1.8
근로소득	344.3	-9.8	1,254.2	-3.9	1,861.2	0.6	2,554.3	2.0	4,057.4	0.8
사업소득	189.7	-4.4	370.3	-6.6	473.7	0.2	622.8	-2.1	1,087.9	-0.3
재산소득	16.1	59.6	6.4	111.8	15.6	-7.7	12.7	1.3	48.3	13.3
이전소득	450.0	10.6	369.1	29.0	343.2	10.7	354.2	18.5	417.0	19.6
공적	343.1	22.9	269.3	41.8	246.4	27.7	249.4	35.6	212.0	38.3
사적	107.0	-16.3	99.8	3.8	96.7	-17.3	104.8	-8.9	205.0	4.9
처분가능소득	884.4	-2.0	1,791.3	0.3	2,400.5	1.2	3,138.8	2.4	4,846.5	1.4
2020. 4/4	1,037.5	7.7	1,993.5	2.8	2,671.8	1.5	3,500.2	2.6	5,454.1	0.7
소득	987.4	4.3	1,943.0	2.9	2,633.3	1.3	3,443.7	1.8	5,377.3	0.6
근로소득	379.9	-9.8	1,244.5	0.2	1,857.6	1.0	2,519.2	0.3	3,831.4	1.6
사업소득	186.8	12.2	368.2	-3.5	452.8	-9.4	620.4	7.2	1,124.8	-10.8
재산소득	10.6	22.2	9.3	9.9	15.6	72.1	10.0	-32.1	28.4	-2.1
이전소득	410.2	17.0	321.0	25.3	307.3	21.9	294.2	6.0	392.7	36.9
공적	295.1	21.7	219.1	34.4	197.7	20.1	191.6	14.5	191.6	22.2
사적	115.1	6.3	101.9	9.4	109.7	25.2	102.6	-6.8	201.1	54.7
처분가능소득	901.2	1.7	1,754.4	1.6	2,376.2	1.5	3,069.5	1.1	4,729.4	0.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9~2020년 분기자료)

○ OECD 균등화 방식 적용이며, 농림어가 제외 분석임.



**부록 2** 2020~2021년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사업 내용 및 규모

	'20년 1차 추경 ('20.3.17)	3차 추경 ('20.7.3)	4차 추경 ('20.9.22)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12.29)	'21년 추경 (맞춤형 피해대책 포함) ('21.3.25)
<b>지원규모</b>	11.7조원 (지출 +10.9, 세입경정 △0.8조원)	35.1조원 (지출 +23.7, 세입경정 △11.4조원)	7.8조원	9.3조원 (예비비 4.8, 기금변경 등 4.5조원)	19.4조원 (추경 14.9, 기정 예산활용 4.5조원)
<b>지원인원</b>	1,100만명+α	930만명+α	1,330만명	580만명	820만명
소상공인	직접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4조원, 94만명) (예비비 등 포함 1.4조원)	새희망자금 (3.3조원, 250만명)	버팀목자금 (4.1조원, 280만명)	버팀목 플러스* 자금 (6.7조원, 385만명) ※버팀목자금 추가지원 (0.6조원)
	금융지원 회복지원	금융지원 (3.1조원) 고용유지지원 등 (0.6조원, 65만명) 재기지원 등 (0.4조원, 20만명)	금융지원 (0.6조원, 101만명) 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등 (2.4조원)	금융지원 (0.5조원, 66만명)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0.1조원, 20만명)	임차료용자 (1.0조원) 재기지원· 긴급유동성공급 (1.0조원, 26만명)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29만명)
근대영안사업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2조원, 51만명) (예비비 등 포함 0.7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61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4조원, 68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5조원, 80만명)
	법인택시기사		법인택시기사 (0.08조원, 8만명)	법인택시기사 (0.04조원, 7.8만명)	법인택시기사 (0.06조원, 8만명) 전세버스기사 (0.02조원, 3.5만명)
	필수노동자			방문돌봄종사자 (0.05조원, 9만명)	마스크 지원 (0.04조원, 103만명) 방문돌봄종사자 (0.03조원, 6만명)
농어민		농수산물 할인쿠폰 등 (0.4조원, 중복)			농어민 바우처 등 (0.2조원, 50만명)
생계위기가구	저소득층 소비쿠폰 (1.0조원, 169만가구) 긴급복지 건보료경감 등 (0.8조원, 575만명)	긴급복지 (0.05조원, 3.0만가구) 주거안정지원, 소액금융 등 (0.8조원, 11만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0.4조원, 55만가구(88만명))	저소득층 긴급복지 (0.1조원, 6만가구)	하계근로빈곤층 한시생계지원 (0.4조원, 80만가구) 노점상 지원 (0.02조원, 4만명) 근로장학금 (0.03조원, 1만명) 긴급복지생활안정 (0.2조원, 8만가구)
양육가구	특별돌봄쿠폰 (1.1조원, 263만명) 양육부담 경감 (0.05조원, 15만명)		아동특별돌봄 (1.1조원, 532만명) 비대면학습지원, 돌봄휴가 등 (0.3조원, 138만명)	가족친화제도, 아이돌봄 등 (0.2조원, 51만명)	가족돌봄휴가· 아이돌봄 등 (0.15조원, 19만명) 장애인 원격수업· 긴급돌봄 (0.02조원, 2만명)
고용지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등 (0.6조원, 17만명)	고용유지, 일자리창출 등 (8.5조원, 207만명)	고용유지, 청년 구직 지원 등 (0.8조원, 50만명)	고용유지, 직업훈련 지원 등 (1.6조원, 102만명)	고용유지,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등 (2.3조원, 60만명) 고용연계유자 (1.8조원, 13.7만명)
방역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2.1조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K방역 (1.0조원, 456만명)	백신구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0.2조원, 105만명)	공공의료 강화, 손실보상 등 (0.8조원)	백신구매·접종 (2.7조원) 방역대응손실보상 등 (1.5조원)
기타	지역경제 회복지원 (1.2조원) 세입경정(0.8조원)	한국판뉴딜 (4.8조원(1.7조원, 중복)) 주력산업 금융지원 등 (6.6조원) 세입경정(11.4조원)	이동통신요금지원 (0.4조원) 목적예비비(0.05조원)		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 (1.1조원)

주: 대상자는 예산안에 의한 목표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4.1.),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부록 3**      **긴급복지지원 한시 기준완화, 한시생계지원 내용 및 경과**

구분	긴급복지 (3차 개선, 20.7.31.~21.3.3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020.10.~12.)	한시생계지원 (2021.5.~6.)																					
위기 사유	<p>○주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의 소득 상실,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이혼, 단전, 출소 등 * 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p> <p>○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개별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인정(3.23. 1차 개선)</p>	<p>○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p> <p>① 금융재산 초과 등으로 긴급복지 기준 탈락자 ② '20.2월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지원받다가 중단된 저소득층 등 ③ 기타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긴급복지 심의위원회 심의)</p>	<p>○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p> <p>○소득감소 증빙</p>																					
소득 기준	<p>○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천원)</p> <table border="1"> <tr> <td>가구원 수</td> <td>1인</td> <td>2인</td> <td>3인</td> <td>4인</td> <td>5인</td> <td>6인</td> </tr> <tr> <td>기준 중위소득</td> <td>100%</td> <td>1,757</td> <td>2,992</td> <td>3,871</td> <td>4,749</td> <td>5,628</td> </tr> <tr> <td>75%</td> <td>1,318</td> <td>2,244</td> <td>2,903</td> <td>3,562</td> <td>4,221</td> <td>4,880</td> </tr> </table>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757	2,992	3,871	4,749	5,628	75%	1,318	2,244	2,903	3,562	4,221	4,880	좌동	좌동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757	2,992	3,871	4,749	5,628																		
75%	1,318	2,244	2,903	3,562	4,221	4,880																		
재산 기준	<p>○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p> <p>○재산 차감 기준 도입(3.23. 2차 개선) 후 확대 -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 대도시 1억6200만 원, 중소도시 8,200만 원, 농어촌 6,900만 원 차감 ⇒ 재산 기준 상향효과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p>	<p>○대도시 공시가 600백만원, 중소도시 350백만원, 농어촌 300백만원 이하 *긴급복지 재산기준의 3배</p>	좌동																					
금융 재산 기준	<p>○5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p> <p>○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150%로 확대 ⇒ 금융재산기준 상향효과 1인가구 763만 원, 4인가구 1,212만 원 이하</p>	해당없음	좌동																					
지원 내용	<p>○(4인기준/월): 생계비 지원(126.7만원/6회)</p> <table border="1"> <tr> <td></td> <td>1인</td> <td>2인</td> <td>3인</td> <td>4인</td> </tr> <tr> <td>지급액 (천원)</td> <td>454.9</td> <td>774.7</td> <td>1,002.4</td> <td>1,230.0</td> </tr> </table> <p>*가구원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증가 의료비(300만원 한도, 2회), 주거(64.3만원 한도, 12회), 복지시설이용(145만원 한도, 6회)</p>		1인	2인	3인	4인	지급액 (천원)	454.9	774.7	1,002.4	1,230.0	<p>○1인 40만원, 4인 100만원 1회 지급 - 타 사업(생계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 제외</p> <table border="1"> <tr> <td></td> <td>1인</td> <td>2인</td> <td>3인</td> <td>4인 이상</td> </tr> <tr> <td>지급액 (천원)</td> <td>400</td> <td>600</td> <td>800</td> <td>1,000</td> </tr> </table>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급액 (천원)	400	600	800	1,000	<p>○1가구 50만원 1회 지급 -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중복 지원 제외</p>	
	1인	2인	3인	4인																				
지급액 (천원)	454.9	774.7	1,002.4	1,230.0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급액 (천원)	400	600	800	1,000																				
추진 체계	<p>시군구 단위 위기가구 지원 TF</p> <p>긴급복지팀</p>	<p>긴급 생계지원팀</p>	<p>시군구</p> <p>한시생계총괄팀</p>																					
실적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84만 건* (*건=가구×지원종류×지원횟수)	35만 가구(2021.12.18. 보도자료)	지급 예정																					

자료: 김성아 외, 2021.(발간예정)